

## 임실군 의회 공고 2026-3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임실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노동자는 고정된 근무 공간이 없어 휴식과 노동환경 보호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쉼터 설치·운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mailto:charity81@korea.kr)

### 4. 제정안: 붙임

#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군수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연구
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4.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제1항제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배달
  -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